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회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(현행 제2조 및 제2조의 2 삭제)

「국가회계법」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를 삭제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17. ~ 12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(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u> <u>1.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</u> <u>2.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내</u> <u>3.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</u> <u>4.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</u> <u>5.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</u>	<u><삭 제></u>

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
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
사람 1명

6.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
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
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
직(이에 상당하는 직을 포함
한다)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
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기
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
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
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
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
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
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
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
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
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

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해촉 등)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

<삭 제>

밝히는 경우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
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
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
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433